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3.11.1.		16		
2	2017.11.2		17		
3	2023.12.18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항공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예산 또는 교비 연구비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삭제 2013.11.1.>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전문기관)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관할 정부기관)에 상정<개정 2013.11.1., 2023.12.18>

③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해 단독활용/공동활용서비스 장비 판정(선정) 및 해제 ['단독활용장비 판단기준(별지 제1호에 명기)' 활용]<개정 2013.11.1., 2023.12.18>

④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판단, 자산 이관 및 처리 사항<개정 2013.11.1.>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학협력단장, 사무처장, 공대학장
2. 임명직 위원 : 전임교원 2인, 외부기관의 관련 전문가 3인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8>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장비심의) ①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 장비 도입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개정 2013.11.1.,2017.11.2.,2023.12.18>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1.1.,2017.11.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13.11.1.,2017.11.2>

연구장비 도입 요구서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과 제 명			
장 비 명			

기본정보	장비명	- 범용적인 장비명을 기입
	장비용도	- 구체적인 용도를 서술
	장비사양·특성	- 성능 및 상세사양 등을 기술 - 규격, 크기, 특성 등을 기술
	예상가격	- 부가가치세를 포함, 모듈화된 장비인 경우 전체 구입가로 산정하여 기록
	취득방법	- 국내··해외 / 구매·개발·임대 등을 구분하여 기재
	도입 예정일	- 장비도입 예정일자를 기재
	설치장소	- 장비 설치장소(건물명, 호실, 실험실명), 환경 등을 기술
타당성 및 활용계획	장비도입 타당성	- 연구 분야에 대한, 구매 장비 도입의 타당성 기술
	장비 중복성 판단	- 교내에 유사·동종장비가 없는지 여부 확인 - 소속 광역지자체 내 유사·동종장비가 없는지 여부 확인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중복성 검토 실시 - 교내외 유사·동종장비와의 차별성 및 별도구축의 필요성
	기본활용계획	- 장비활용계획을 기술
공동활용계획	공동활용 여부 (선택 필수)	* 공동활용 허용 □ * 공동활용서비스 □ * 단독활용 □ ※ 아래 **단독활용장비 판단기준**에 1개 이상 미적용 시 공동활용 장비로 선택 ①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 (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②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 개발 중인 장 ③ 특수목적용 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④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장비 ⑤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 ⑥ 위험물질 취급 및 고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 ⑦ 초고감도 정밀장비로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⑧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단독활용 사유	[단독활용 선택 시] - 위 체크리스트 상 해당되는 번호 기입 후, 단독활용 세부 사유 기술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선택 시] - 기관 내·외부 공동 활용여부 기술 및 계획 기술 - 해당 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 활용 가능 여부 기술

※ 파란 글자는 작성 시 참고한 후 삭제하며, 연구 장비 도입 요구서의 분량은 A4 2장 이내로 함.

별 첨 장비 견적서 및 사양서, 사진 등 관련자료 각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별지 2 <개정 2013.11.1.,2017.11.2>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표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과 제 명			
장비명(자산번호)			
심의내용			

장비 단독/공동 활용여부 판정	공동활용 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 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판정사유 :** * 공동활용 서비스 : 대외 개방을 위해 연구시설, 이용료, 절차, 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 되는 시설 및 장비, 연구기관 차원 체계적 관리 * 공동활용 허용 : 연구자가 공동연구의 목적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시설 및 장비 /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단독활용 :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 및 장비					
기타 심의사항	*** 심의의견 :** *-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해제* *-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저활용·유휴·불용장비 판정* *- 위 판정 자산에 대한 이관 및 처리* *-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 장비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파란 글자는 작성 시 참고한 후 심의내용 기입 시 삭제

별 첨 연구장비 도입 요구서 1부(1억 이상의 장비일 경우)

년 월 일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 : (인)